

감사결과처분요구서

No. 2021-					
소관부서	시행년도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조치방법	금 액(원)	
○○○○○○○ (○○○○○○○○○○○○)	2021	개선, 권고, 기관경고, 시정	-	-	감봉3개월(1명) 훈계(1명)

제 목 : ○○○○○○○○○○ 안전관리 미준수

1. 현황

○○○○○○○○○○○의 ○○ ○○○은 2021.9.1.일 권총사격장에서 고객의 권총사격을 보조하면서 ¹⁾고객의 권총사격 후 불발탄(1발) 발생을 보고하지 않았고, ²⁾탄피(9발)과 불발탄(1발)을 규정대로 탄피 케이스에 넣지 않고 각각 개인 옷주머니와 간이탄약함에 임의 보관하였으며, ³⁾○○이 탄피 및 불발탄의 행방을 묻자 모른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고, ⁴⁾탄피를 사격장 건물 밖 화단에 은닉하였다. 하루 업무를 마친 뒤 탄약 정산 과정에서 부족한 탄피의 행방을 묻는 ○○의 질문에 2회에 걸쳐 모른다고 부인하였으나, CCTV를 통해 본인의 행위가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는 본인 행동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며, 당황하는 마음에 엉겁결에 한 것으로 탄피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2. 감사 결과

1) 관계규정 및 법령(판단 기준)

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총포화약법)

- 제10조(소지의 금지)
- 제12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나. 공사 임직원행동강령

- 제3조(임직원의 기본윤리)
-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

2) 위법부당 내용

가. ○○○의 행위는 변호사 법률검토 결과, “불발탄을 임의 보관한 것은 총포화약법 10조 및 12조에 저촉되며, 불발탄과 탄피를 은닉한 것은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다수 의견이 나왔기에,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아울러, 공사 임직원행동강령의 제3조(임직원의 기본윤리) 1항(...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 견지...), 2항(...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공사의 명예를 유지...), 3항(...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 제6조 ‘공정한 직무수행’ 1항(...관련된 제반법령과 규정을 준수...), 2항(...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위반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3) 관련자 주장 및 판단

○○○은 “불발탄 발생이 처음이라 당황하여 혼자 조용히 처리하려고 불발탄을 수거하여, 현

장에 있는 당일용 탄약금고에 임의보관하고 이를 ○○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탄피는 버리면 될 일”이라는 등의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말에서 그가 불발탄과 탄피의 규정된 처리절차를 평소 경시해왔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입사 2년이 다 되어가므로 업무 규정과 절차를 충분히 숙지했을 것인데도 그렇게 행동한 것은 평소 본인 직무를 가볍게 여기며 근무를 해왔을 여지를 보여준다. 또한 ○○의 2회에 걸친 탄피 및 불발탄 추궁에 ‘모르겠다’고 거짓 대답한 것은 최초 행위가 엉겁결에 한 행동일 수 있으나 그 뒤 이를 바로잡기 보다는 오히려 최초의 잘못을 감추고자 재차 잘못된 행위를 한 것이므로 가볍게 보기 힘들다. 이처럼 본인업무의 중요성을 망각한 채 규범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위험물질인 총포 및 화약을 다루는 사업장 근무자로서 가져야 할 절도 있는 태도와는 거리가 있기에 교정을 위해서 일정한 수준의 경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처분요구내용

1) 검토결과 및 처분요구

본 특정감사를 통해 ○○ ○○○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12조를 위반하였고, 공사 임직원행동강령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항과 제6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이는 공사 징계양정기준의 직무태만(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 처분을 함이 알맞다고 판단된다.

또한 ○○ ○○○은 직상감독자로서 본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다. 다만 사건 발생 뒤 신속하고도 적절한 조치와 재발방지 노력을 한 것을 감안하여, 인사규정 시행세칙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직원훈계 등 처분에 관한 세칙’ 제6조를 적용한 ‘훈계’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는 직원이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데 대하여 전반적인 사전교육·인력관리의 책임이 크며, 특히 업무매뉴얼 및 그에 따른 업무의 시스템화 등의 면에서 시정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의 관리업무를 맡은 뒤 자체적인 관리규정을 아직까지 제정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과장을 장기간 정식 임명하지 않는 등 조직의 안전관리와 인력관리상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조치할 사항

- 권총 탄피 및 불발탄을 부당하게 처리한 ○○○을 공사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처분(감봉3개월)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 ○○○○○○ ○○○○○○○○○○○○○ ○○ ○○○ - 감봉3개월

- 권총 탄피 및 불발탄을 부당하게 처리한 하급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을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 ○○○○○○ ○○○○○○○○○○○○○ ○○ ○○○ - 훈계.

- ○○○○○○○○○○○○○ ○○○○○○○은 앞으로 탄피 및 불발탄 처리를 함부로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

▶ ○○○○○○○○○○ - 기관 경고

- ○○○○○○○○○○ ○○○○○○은 기존의 업무매뉴얼을 보완·개선하여 실탄인계·인수증에 팀장 날인, 전체 CCTV자료의 3개월 보관, 직원의 안전교육 제도화, 탄약 및 총기운반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업무매뉴얼을 수립하고, ○○○○은 본 감사 처분요구일로부터 1년간 총포·화약류를 직접 취급하는 업무에서 배제하고, 이후 배제기간 연장 여부는 근무평가를 통해 자체 판단하여 조치 바랍니다.

[관련기관]

▶ ○○○○○○○○○○ - 시정

- ○○○○○○○○은 ○○○○○○○○○○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관리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총포·화약류의 안전관리를 포괄하는 ‘○○○○○○○○○○○ 관리규정’을 조속한 시일 안에 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관련부서]

▶ ○○○○○○○○ - 개선

- ○○○○○○○○은 행정을 총괄하여 안전관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간 직무대행체제로 운영 중인 관리과장을 빠른 시일 안에 정식 임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관련부서]

▶ ○○○○○○○○ - 권고.